

2026년도 「한-일 인력교류사업」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일본 연구자 간 국제 연구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한-일 인력교류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5일

<주무부처>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분류 : 세부국가간협력기반조성 > 내역인력교류 > 내내역한-일 인력교류

□ 사업목적

- 한국과 일본 연구자 간 기술분야별 인력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을 통한 양국 간 연구협력 기반 마련

□ 지원내용

공모형태	지원분야	연구기간 (연구개시일*)	지원내용	총 연구비**	신규과제 수***
자유공모	①인공지능, ②BT, ③에너지, ④양자, ⑤반도체, ⑥소재	1년(12개월) ('26.8.1.)	인력교류 (학회, 세미나 등)	20백만원	12개 내외

* 연구개시일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** 간접비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 5% 적용

*** 지원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과제 조정 가능

2. 신청(수행)자격 및 참여 제한

□ 신청자격

- 연구개발기관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혁신법 제2조(정의)
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- 연구책임자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

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

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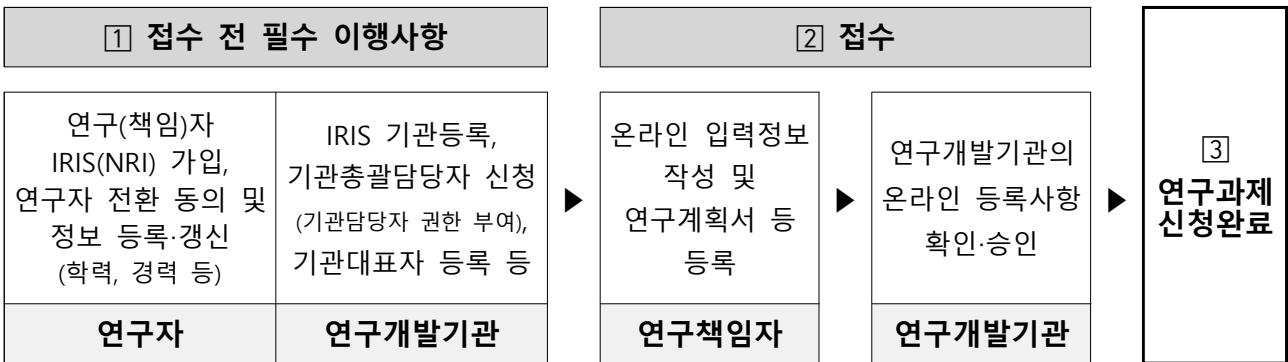
□ 참여제한

- **(1인 1과제)** 한-일 인력교류 사업 1인 1과제 수행 제한 기준 적용
- **(정부R&D 공통 제한사항)**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과제신청 및 참여가 가능함. 신청 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,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,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 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(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
- **(차별성)**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차별성*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,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 - * NTIS를 통해 연구목표,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 여부 최종 결정
- **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**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**연구과제 수 상한 제도(3책5공)를 적용하지 않음.**

3.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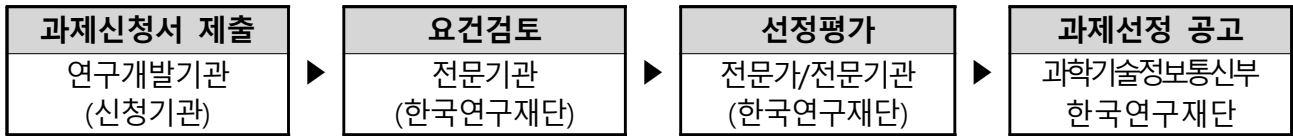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IRIS 회원가입, ②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- *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/ 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- ※ ①/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- 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4.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□ 선정절차



- ※ 접수마감 후 요건검토를 실시하며,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※ 과제 접수 규모 등에 따라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평가절차 및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.

□ 평가방법

- 평가방법 : 온라인서면 또는 패널 토론평가
- 평가항목(안)

평가항목	세부내용
인력교류의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 인력교류의 필요성 - 인력교류 수행 연구자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- 해외 연구주체와의 협력관계 및 상대기관의 기여도
연구계획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과제의 필요성, 창의성 및 우수성 - 연구목표와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, 달성가능성 등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방법의 질적 수준
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동 사업과의 연계성 -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연구팀의 수행능력 - 국외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연구팀의 수행능력
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-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- 예상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활용 가능성

- ※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5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

사업명	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	연구개발기관 승인가간
한-일 인력교류	2026.4.20.(월) 09:00:00 ~ 2026.5.21.(목) 17:00:00	2026.4.20.(월) 09:00:00 ~ 2026.5.21.(목) 17:00:00

- ※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 반드시 “제출완료” 처리가 되어야 하며(“계획서 작성 중”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), 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 불가
- ※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함.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	필수여부	비고
1	국문 연구개발계획서	연구개발계획서 PART1(표지1)	○	웹입력
		연구개발계획서 PART2(본문1)	○	[양식1]
		연구개발계획서 PART3(본문2)	○	웹입력
2	신규과제 기타증빙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[양식2]
	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		
		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		
3	기타 증빙(필요 시)	별도양식 없음	X	-

6. 기타사항

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.
 ※ 「과학기술기본법»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»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»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»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□ 생성형 인공지능(AI) 사용시 유의사항

- ※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[개정판] (25.9, 한국연구재단) 참조
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중간(단계)/결과(최종)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 및 활용할 경우,
 - ①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
표기 항목(예시) : AI 도구 회사/연도/이름(버전, 출시일자/활용일자), [자료 유형]*, URL, 활용방법 등
 * 자료 유형: 대형언어모델(LLM), 소프트웨어(SPSS, MATLAB 등 통계나 수치분석 도구 등) 같은 AI 도구의 유형

- ②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, 필요시 수정·보완
 - ※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, 위조,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목적
- ③ AI 활용 시 연구정보(연구데이터, 과제정보, 수행자 개인정보)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
 -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,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.

□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
-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(또는 학술대회)를 활용

-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
 ※ 연구(책임)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(선정·단계·최종)에 반영될 수 있음.

□ 사사표기(양식)

▶ **국문표기**
 이 성과*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IRIS 과제번호).

▶ **영문표기**
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**) (IRIS 과제번호).

*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
 ** Ministry of Science and ICT

7. 추진일정(안) ※ 하기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일정	추진내용	비고
2026.4.15.(수)	· 한-일 인력교류 사업 신규과제 공고	-
2026.5.21.(목)	· 신규과제 접수 마감	-
2026.6~7월	· 선정평가 및 부처심의	-
2026.8월	· 신규과제 연구개시	-

8. 문의처

구분	담당부서	연락처
한-일 인력교류사업	한국연구재단 미주아시아협력팀	(사업관련) 02-3460-5702 (접수관련) 02-3460-5704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IRIS)	IRIS 콜센터 IRIS 홈페이지	1877-2041 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